〔일련번호 : 3〕

양 천 구

시 정 요 구

제 목 자치회관 수강료 환불처리 소홀

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

내 용

1. 업무개요

♤♤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자치회관 수강료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르면 수강료 환불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강좌프로그램 개시 이전에는 전액환불이 가능하나 프로그램 개시 이후에는 별표 1의 수강료 반환기준에 따라 환불한다. 이 경우, 자치회관의 귀책사유로 인해 강좌프로그램의 개강이 불가한 경우에는 전액 환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치회관 수강료 환불 처리기간은 2일로 정하고 있다.

※ 수강료 반환기준(제14조 관련)

수강기간	반환사유 발생일	환불금액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수강개시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	총 수강시간은 교육기간 중의 총 수강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강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동은 감사 대상기간동안 아래표와 같이 노경옥 외 16건의 환불신청에 대한 환불금액 산정을 부적정하게 하여 총 90,420원을 과다지급하고, 2,630원을 과소지급하는 등 자치회관 수강료 환불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자치회관 수강료 환불금액 부적정 내역

연번	신청자	신청일	환불금액	환불처리일	지적사항
1		23.1.9.	45,000	23.1.10.	환불금액 5,000원 과다 지급 (잔여2개월 + 당월 2/3)
2		23.1.16.	58,340	23.1.17.	환불금액 8,340원 과다 지급 (잔여2개월)
3		23.1.17.	30,800	23.1.18.	환불금액 6,800원 과다 지급 (잔여2개월)
4		23.2.15.	22,340	23.2.16.	환불금액 2,340원 과다 지급 (잔여1개월)
5		23.2.16.	50,000	23.2.17.	환불금액 25,000원 과다 지급 (잔여1개월)
6		23.3.3.	21,700	23.3.6.	환불금액 8,360원 과다 지급 (잔여1개월+당월 2/3)
7		23.4.7.	45,000	23.4.11.	환불금액 5,000원 과다 지급 (잔여1개월+당월 2/3)
8		23.4.7.	75,000	23.4.11.	환불금액 8,330원 과다 지급 (잔여2개월+당월 2/3)

연번	신청자	신청일	환불금액	환불처리일	지적사항
9		23.7.10.	54,030	23.7.12.	환불금액 690원 과다 지급 (잔여2개월+당월 2/3)
10		23.10.10.	45,000	23.10.12.	환불금액 5,000원 과다 지급 (잔여2개월+당월 2/3)
11		23.10.17.	28,000	23.10.18.	환불금액 4,000원 과다 지급 (잔여2개월)
12		23.11.2.	35,560	23.11.5	환불금액 2,220원 과다 지급 (잔여2개월+당월 2/3)
13		24.1.10.	40,540	24.1.10.	환불금액 2,130원 과소 지급 (당월 1/2)
14		24.3.12.	12,000	24.3.14.	환불금액 500원 과소 지급 (잔여2개월+당월 2/3)
15		24.4.9.	36,000	24.4.9.	환불금액 4,000원 과다 지급 (잔여2개월+당월 2/3)
16		24.11.11.	33,340	24.11.12.	환불금액 3,340원 과다 지급 (잔여1개월+당월 1/2)
17		24.11.11.	20,000	24.11.12.	환불금액 2,000원 과다 지급 (잔여1개월+당월 1/2)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

♤♤동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5. 조치할 사항

♤♤동장은

과다지급한 프로그램 수강료 환불액 90,420원은 회수, 과소지급한 환불액 2,630원을 환급하시기 바라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고,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환불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시정)**